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6카합50369　선거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채 권 자　　1. 전명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79, 208동 1704호(정자동, 정든마을)

2. 노성국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79, 208동 1704호(정자동, 정든마을)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허진영

채권자들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순교

채 무 자　　1.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6층 노동조합(정자동, KT본사)

대표자 위원장 김인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진

2.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KT본사)

대표이사 박윤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담당변호사 명순일

주　　문

1.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가. 채무자 케이티 노동조합은 2026. 11. 20. 실시할 예정인 케이티노동조합 중앙위원장 선거의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공고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 전명군에 대한 2026. 11. 6. 자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지 및 채권자 노성국에 대한 2026. 11. 6. 자 전임자 지위 해지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에서, 채권자 전명군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위에, 채권자 노성국이 조합전임자 지위에 각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는 위 지위 해지를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현업 복귀 지시를 집행하거나 무단결근 처리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케이티 노동조합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채무자 케이티 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 케이티 노동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1) 신청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26. 11. 20. 실시될 예정인 케이티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자 전명군의 입후보를 위해 추천서를 징구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차별하였다. 특히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을 근로시간면제자 내지 전임자 지위에서 부당하게 해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지위해지'이라 한다)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입후보 준비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2조 본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법상의 수권에 따라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적 임의단체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조합민주주의란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 노동조합의 운영.활동.해산에 대하여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관리.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차별 취급은 금지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은 노동조합의 요건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불가결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투표에 반영되기 어려워 채권자들의 피선거권이나 선거참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차별 취급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지위해지도 채권자들의 선거참여권이나 조합업무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주문 기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를 위한 2026. 10. 29. 자 출정식에 채무자 조합의 간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채무자 조합 중앙본부의 국장, 즉 중앙간부들에게 위 출정식 진행을 위해 각자 맡을 업무가 배정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간부는 채무자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하는 집행부의 구성원인만큼, 이는 채무자 조합 집행부가 특정 후보를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나. 제출된 녹취록 기재, 녹취파일 내용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추천서 양식을 교부받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거나, 일부 조합원이 채권자 전명군을 위한 추천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채권자 전명군을 위한 추천서에 서명을 한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 간부가 그 경위를 추궁하는 등 채권자들이 추천서를 징구하는 데 방해를 받았거나 채권자 전명군을 위한 추천서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의사를 위축되게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조합 또는 채무자 회사가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채권자 전명군의 입후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피선거권 내지 선거참여권이 부당하게 제약된 사실이 있었음은 일응 소명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전임자의 지정, 변경, 해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에

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도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전임자 지위 해지는 채권자들이 조합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불이익한 조치이고, 특히 2026. 11. 4.부터 11. 6.까지로 단기간인 이 사건 선거의 후보 등록기간 도중인 2026. 11. 5.에 지위해지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의 입후보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채무자 조합 담당자는 2026. 11. 5. 오전경 채권자 측에게 근무지 복귀 또는 연차사용을 요구한 후, 채권자들에게 연차 사용이나 근태 조율의 기회 등을 제공하거나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지위해지를 단행한 후 이를 채무자 회사에 통보하였다. 실제로 채권자들은 같은 날 채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2026. 11. 6. 자 업무 복귀를 안내하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채권자들이 사전보고나 휴가신청 없이 이 사건 선거 입후보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위해지는 채권자들의 조합업무참여권 내지 피선거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크다. 이 사건 지위해지가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지시도 위법하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현재 이 사건 선거 입후보를 마쳤고 채무자 회사의 복무협조를 받아 업무에 복귀할 필요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입후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는 앞서 본 사정들이 현재 시점에서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지위해지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선거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 시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채권자들의 조합업무참여권이나 선거참여권이 다시금 제약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전히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 신청의 경과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조합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채무자 조합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1. 19.

재판장 판사 김 세 현

판사 박 광 일

판사 권 민 재